

“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1월 22일(월)부터 ~ 1월 25일(목)까지입니다”

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

☞ 2024년 1월 25일(목)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꼭! 제출해 주세요~

기안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인이 세무서에 증압소득세 신고로 아셔야 합니다.

☞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☞

[2024년 1월 15일(월) 오픈 예정]

※ 20일(토) 이후 자료 다운로드 권장!!
(일부 자료 미반영 가능성 있음)

- ▶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이며, 이중공제 및 착오신고로 검증오류 통보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.
 - ▶ 세법상담은 국세청으로 직접 상담 요망
 - ▶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
 - ▶ 연말정산 관련 문의: 국번없이 126 ⇨ 5
 - ▶ 연말정산종합안내: 국세청⇨국세신고안내⇨연말정산⇨연말정산 종합 안내
☞ 연말정산 신고안내(책자)등 종합안내 참고
-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 후 업로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
-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서비스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,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(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)
- 국세청 자료 이외(기부금(종교단체 등), 의료비(안경 등), 월세세액공제, 취학전 아동 학원비) 영수증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
- ★ 나이스에 업로드 하는 방법
- ① 나이스-기본메뉴-나의메뉴-연말정산-정산공제자료등록-PDF업로드-찾기-등록
 - ② 나이스에 업로드한 모든 증빙서류를 **메신저 쪽지** 또는 **메일(kje04111@jbedu.kr)**로 전송(필수)
 - *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-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[파일명: 2023년 연말정산 본인성명.pdf]
 - * 파일이 도착하면 입력내용을 확인 후 틀린 사항이 있을 때만 연락드리겠습니다.

기부금 명세서에 입력할 각종 단체 사업자 번호

법 인 명	사업자등록번호	기부금종류	비고
교원단체총연합회	402-82-13726	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(40)	해당자 입력
전국교직원노동조합	107-82-06408	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(40)	해당자 입력
공무원노동조합	해당고유번호	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(40)	해당자 입력
불우이웃돕기등 전북교육청	418-83-00179	법정기부금(10)	해당자 입력

■
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
■
2024.1.22.(월)~1.25.(목)까지

- ▶ 홈택스 소득세액공제자료 2024. 1. 15. (월) 오픈 예정
- ▶ 2024년 1월 20일(토)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로드 권장(자료 미반영 가능성 있음)
 ※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“PDF파일 제출요함”
 ※ 제출하신 모든 공제 내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.

1. 국세청홈택스(<http://www.hometax.go.kr>) 인증서 로그인⇒조회/발급⇒연말정산⇒연말정산간소화



- ☞ 본인 공인인증서등록 ⇒ 인증서 등록 버튼 클릭⇒공인인증서등록⇒주민등록번호 입력⇒ 등록하기⇒해당공인인증서선택후⇒확인
- ☞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,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. (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)

2. 연말정산 간소화 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⇨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/발급(근로자)

※ 연말정산자료조회 밑에 조회(근로자) 버튼만 눌러도 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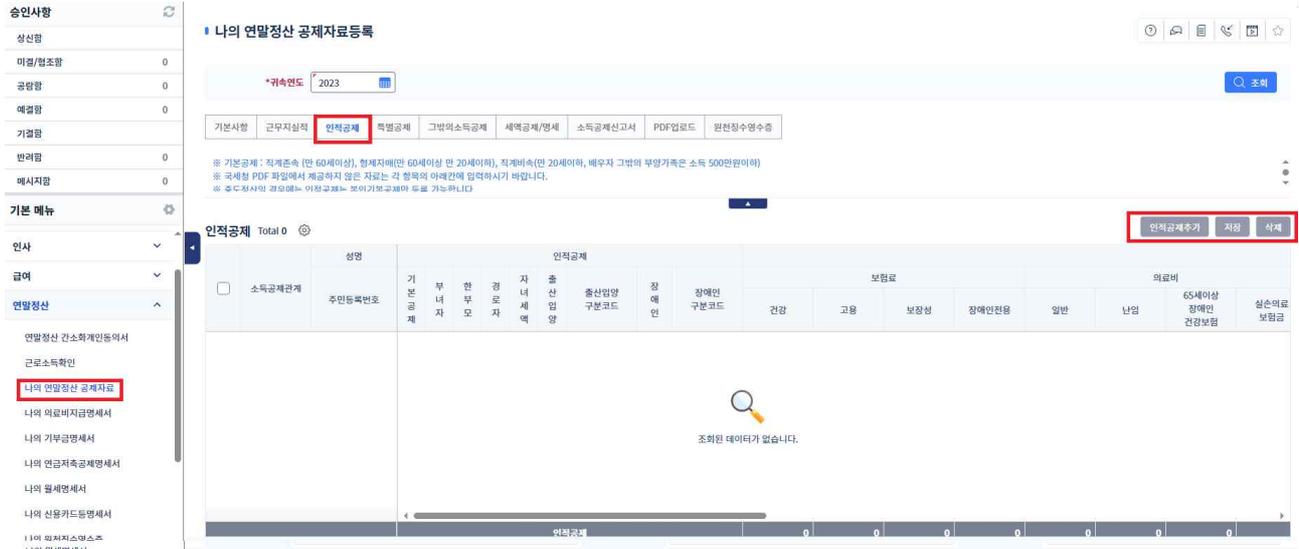
3. 귀속년도 2023년 ⇨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선택 ⇨ 건강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돌보기 클릭(해당 세액 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) ⇨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⇨ PDF파일로 저장(비밀번호 없이, 파일명: "2023년 연말정산 홍길동")



4. 나이스 ⇨ 기본메뉴 ⇨ 연말정산 ⇨ 정산공제자료등록 ⇨ 귀속년도(2023) ⇨ 조회 ⇨ 기본사항 탭 ⇨ 세대주, 세대원 선택 ⇨ 근무기간 확인 및 변경 ⇨ 저장



5. 나이스 ⇨ 기본메뉴 ⇨ 연말정산 ⇨ 정산공제자료등록 ⇨ 귀속년도(2023) ⇨ 조회 ⇨ 인적공제 탭 ⇨ 인적공제대상자 확인(추가 및 삭제)



※ 주의: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 업로드시 인적공제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 안 되
오니 인적공제 내역과 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의 인적공제내역이 일치 해야함.

- * 부양가족 인적공제 주의 ***
- 범위: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·형제자매·배우자
 -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및 60세 이상만 해당
 - 공적연금 수급자 제외(연 516만원 이상 수급)
 - 사적연금 수급자 제외(연 1,500만원 이상 수급)
 - 공무원연금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가능
 - 인적공제의 경우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함

6. 나이스 ⇨ 기본메뉴 ⇨ 연말정산 ⇨ 정산공제자료등록 ⇨ 귀속년도 (2023년) ⇨ 조회 ⇨ 찾기[홈택스에서 다운 받은 PDF파일(2023년 연말정산 홍길동.pdf) 파일 찾기] ⇨ 등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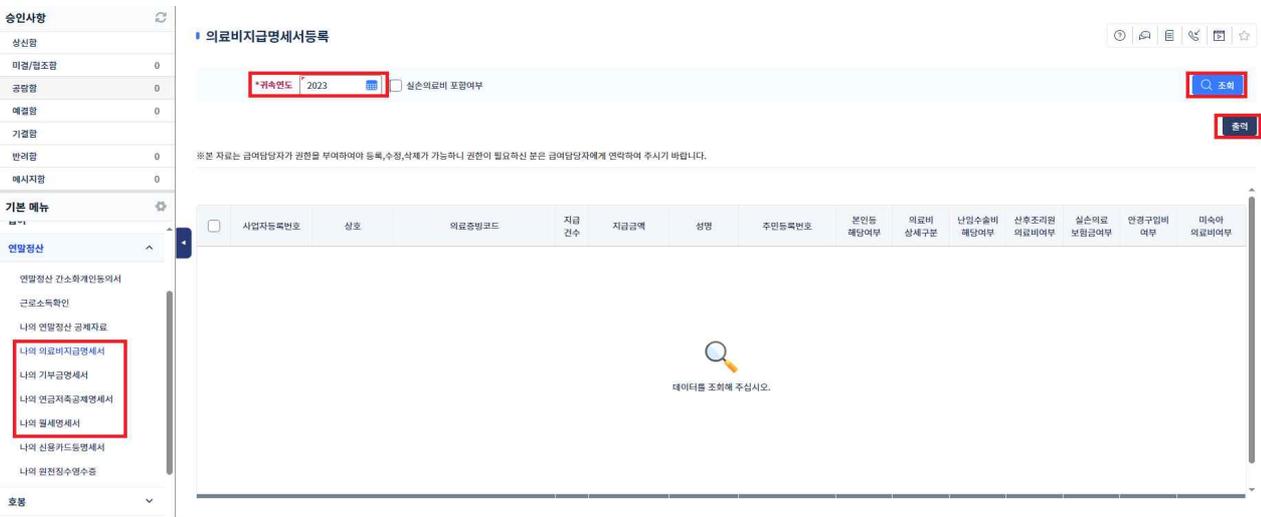
※ 주의: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PDF로 업로드한 내용이 모두 삭제됨

입력시 유의 사항

- 정산공제자료 PDF파일 등록전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후 소득 기본대상자가 아닌 대상자는 삭제 후 업로드 해야함.
 ⇨ 홈택스에서 받은 파일의 기본공제 대상자와 나이스 정산공제자료-인적공제 기본대상자가 일치 해야함(홈택스 PDF파일 다운로드시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만 받아야함)
 ⇨ 인적공제 대상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요함
- 홈택스 공제자료 외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, 기부금명세서등록 입력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 ex) 750308-1234567 ⇨ 7503081234567

7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아닌 그밖의 공제 자료 등록(의료비등)

나이스 ⇨ 기본메뉴 ⇨ 기본메뉴 ⇨ 연말정산 ⇨ 의료비, 기부금, 연금저축, 월세명세 ⇨ 귀속년도 (2023년) ⇨ 조회 ⇨ 등록 ⇨ 담당자에게 메신저 쪽지/메일로 제출



중 방 서 류 제 출

※ 제출하신 모든 공제 내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.

제출기한	2024년 1월 25일(목)	
입력기간	2024년 1월 22일(월) ~ 1월 25일(목)	
제출서류	대상 및 증빙	방법
① 의료비공제 신고서	국세청자료 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: 나이스 업로드 파일을 쪽지/메일로 제출	☞ 나이스⇒기본메뉴⇒연말정산⇒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⇒귀속년도(2023년)⇒조회⇒ [출력] 버튼 ⇒ PDF 다운로드 ⇒ 증빙서류 제출
② 기부금공제 신고서	국세청자료 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: 나이스 업로드 파일을 쪽지/메일로 제출	☞ 나이스⇒기본메뉴⇒연말정산⇒ 기부금명세서등록⇒귀속년도(2023년)⇒조회 ⇒ [출력] 버튼 ⇒ PDF 다운로드 ⇒ 증빙서류 제출
③ 연금저축공제, 월세명세서, 신용카드	국세청자료 외 그밖의 자료 등록자 : 나이스 업로드 파일을 쪽지/메일로 제출	☞ 나이스⇒기본메뉴⇒연말정산⇒ 연금저축공제등록⇒귀속년도(2023년)⇒조회 ⇒ [출력] 버튼 ⇒ PDF 다운로드 ⇒ 증빙서류 제출 ☞ 나이스⇒기본메뉴⇒연말정산⇒ 월세명세서등록⇒귀속년도(2023년)⇒조회 ⇒ [출력] 버튼 ⇒ PDF 다운로드 ⇒ 증빙서류 제출 ☞ 나이스⇒기본메뉴⇒연말정산⇒ 신용카드등 명세서등록⇒귀속년도(2023년)⇒조회 ⇒ [출력] 버튼 ⇒ PDF 다운로드 ⇒ 증빙서류 제출
④ 주민등록등본	모든 교직원 :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으로 사용하니 꼭 제출	☞ 정부24 : http://www.gov.kr ※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증빙 ※
⑤ 가족관계증명서	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	☞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: http://efamily.scourt.go.kr ※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증빙 ※
⑥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파일 및 기타 증빙서류	모든 교직원 : 나이스 업로드 파일을 쪽지/메일로 제출	☞ 국세청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인증서 로그인 ⇒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⇒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 ⇒ 귀속년도(2023년) ⇒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⇒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돌보기 클릭(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) ⇒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⇒ PDF파일 <u>암호 없이</u> 저장[파일명: 2023년 연말정산 본인성 명.pdf] ※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"PDF파일도 제출 요함" ☞ 기타 증빙서류 제출
⑦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	해당 교직원	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, 소득확인 가능 증빙서류(사업자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표기된 임금대장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